

2016. 4. 13. 제20대 국회의원선거

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

-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(기관·단체 포함)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(공직선거법 제 9조),
- **공사 임직원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**(공직선거법 제 53조 및 제 60조에 근거)되므로 **아래 사례와 같은 SNS 활동시 유의가 필요함.**

1.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는?

- 특정 정당·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(음성·화상·동영상 포함함. 이하 같음)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
- 선거 관련 게시글에 '공유하기'를 클릭하는 행위
-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(응원합니다, 박수를 보냅니다 등)을 다는 행위
- 선거 관련 게시글에 '좋아요'를 **계속적·반복적으로** 클릭하는 행위
※ 단순히 '좋아요' 버튼을 1~2회 클릭한 것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선거 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.
-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
- 예비후보자 홍보물,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(SNS, 모바일 메신저 포함함. 이하 같음)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(리트윗)하는 행위
-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
-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
-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·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·전송하는 행위
- 특정 정당·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

1.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는?

-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,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 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
- **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**
-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
- **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, 포털,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**
-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·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, 미니홈피, 페이스북,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 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
- **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**

공무원 이외에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상기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됨

최근 SNS 활동 관련 주요 조치 사례는?

- 허위사실을 공표(당선목적, 낙선목적)한 행위,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
- 특정 지역·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·모욕한 행위
-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히면서 최초 공표·보도 출처(매체명, 보도 일자 등)를 밝히지 않은 행위
- 기부행위 의사를 밝힌 행위
-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선거운동(호별방문 장면 등)을 게시한 행위
- 공무원 등 선거운동 금지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예비후보자가 게시한 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한 행위
-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글을 게시한 행위